

의안번호	2218418
의 퇴 인	고민정의원
회 답 일	2026.07.23.
추계번호	26C2252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4,450만원, 2031년 6억 8,946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0억 8,325만원(연평균 6억 1,65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	41	-	-	-	41	8.2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	-	345	345	345	345	1,380	276.0
공청회 개최(안 제10조)	340	320	320	320	340	1,640	328.0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1조)	4.5	4.5	4.5	4.5	4.5	22.5	4.5
추가재정소요	345	710	669	669	689	3,083	617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세부 항목의 합산액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10조 (공청회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5	안 제11조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6	안 제13조 (교원의 연수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에게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시책을 마련하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책무를 명시한 선언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참고로,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¹⁾ , 이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한 바 있음 ²⁾
2	안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	·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3	안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4	안 제10조 (공청회)	○	· 202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개최된 세미나 및 공청회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
5	안 제11조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조하여 위촉위원 수에 단가와 회의 횟수를 곱하여 추계
6	안 제13조 (교원의 연수 등)	×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의 교원에게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정안이 시행되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실시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 주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②시·도교육청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 ③공청회 개최(안 제10조)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1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7조) 제정안에 따라 4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발생하며,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 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고려하여 2028년부터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
 - －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

1)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1.11.24.), 15p

2) 국가교육위원회교시 제2024-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안 제8조) 제정안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비용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발생하는 2028년부터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
 -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0조) 202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개최된 세미나 및 공청회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
 - 교육부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13개 분과를 운영하였고³⁾, 분과별로 각각 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제정안에 따른 공청회 개최 비용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청회 예산 중 1개 분과에 편성된 예산을 준용해 추계
 -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계획 수립 1년 전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가정
- (안 제11조)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으로, 위촉위원 수에 단가와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
 - 참석 수당 외에 임차료 등 부대 경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의 평균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4,091만원으로 추계⁴⁾

3) 총론,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술·가정, 정보, 예술, 체육, 선택·교양, 창의적 체험활동

4)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의 평균값을 활용한 것임

- 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고려하여 2028년부터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

[표 2]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

(단위: 만원)		
과제명	사업연도	연구용역비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	2021	3,000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22	3,636
제3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22	1,818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4	9,000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 기획 기초 연구	2024	3,000
평균		4,091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	41	-	-	-	41	8.2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세부 항목의 합산액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시·도교육청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 8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3억 7,984만원으로 추계⁵⁾

-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되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발생하는 2028년부터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
- 연구용역 사례의 평균치를 준용하여 산출한 시행계획 수립 단가에 시·도교육청의 수를 곱하여 연간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2,156(\text{만원}) \times 16(\text{개}) = 3\text{억 } 4,496\text{만원}$$

5)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의 평균값을 활용한 것임

[표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만원)

과제명	사업연도	기관명	연구용역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16	경기도	1,850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1	성남시	2,618
학교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2024	충청북도교육청	2,000
평균			2,156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표 5]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	-	345	345	345	345	1,380	276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3. 단수조정에 따라 세부 항목의 합산액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공청회 개최(안 제10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202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개최된 세미나 및 공청회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6억 4,000만원(연평균 3억 2,800만원)으로 추계

- 공청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년 전에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개최 비용과 개최 횟수를 곱하여 공청회 개최 비용을 산출
- (개최 비용) 2021년 교육과정 개정 당시 공청회 개최 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준용함
- (개최 횟수) 국가 및 각 시·도교육청이 연 1회 개최한다고 가정하고, 개최 주기는 계획 수립 주기와 같다고 가정
 - 제정안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관련 공청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시행계획 관련 공청회는 매년 개최된다고 가정
 -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국비로, 시행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지방비로 부담함을 가정

[표 6] 공청회 개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공청회 개최(안 제10조)	340	320	320	320	340	1,640	328
국비	20	-	-	-	20	40	8
지방비	320	320	320	320	320	1,600	320

주: 1.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국비로, 시행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지방비로 부담함을 가정
2.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1조)

□ 위촉위원 수에 단가와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향후 5년간 총 2,250만원(연평균 450만원)으로 추계

- (위촉위원 수) 제정안의 규정을 고려하여⁶⁾ 수당 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는 15인으로 가정
- (단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조하여 30만원을 적용함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 내로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회의 횟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해 연 1회 개최된다고 가정

[표 7]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1조)	4.5	4.5	4.5	4.5	4.5	22.5	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안 제11조(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에서 10년 이상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연구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재정소요와 상이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